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토론회

- 생활속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

일시: 2014. 12. 9.(화) 14시

장소: 충남대학교 대덕홀

주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 충남대학교



개 / 회 / 사

어느덧 2014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12월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충남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 주시고 충남대학교까지 찾아주신 현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세미나에서 소중한 원고를 발표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맞서는 방파제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택한지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기본적인 인권과 함께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으로 인권의 소중함과 인간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유엔은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 2단계 행동계획을 통해서 대학의 인권교육 기반 조성 and 인권교육 활성화를 권고해 왔고, 충남대학교는 일찍이 200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맞아 ‘생활 속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과제와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대전인권사무소가 문을 열게 된 것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충남대학교 등 대학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더욱 의미있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공동세미나가 우리 사회에서 인권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현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충남대학교 총장 정 상 철



환 / 영 /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주신 충남대학교 정상철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기념하여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참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류 최초의 국제적 합의문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세계인권선언에서 표방한 숭고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은 기존 국가기관과 별도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각국에 권고하였고, 이에 우리나라도 2001년 우리 위원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인권은 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인권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계인권선언도 우리 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선언의 초안 작성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가 강조했습니다. 이는 루스벨트 여사가 1958년 유엔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10주년을 계기로 한 다음과 같은 연설의 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편적 인권은 결국 우리의 집에서 가까이 있는, 너무 작아서 세계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을 가까이 하려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없다면, 큰 세상에서 발전하고자 해도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취임이후 생활밀착형 인권의 실현을 주창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확장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국가권력과 관



런된 인권침해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은 자신의 주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이나 차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 문제, 서비스직 종사자의 감정노동 관련 문제, 무분별한 CCTV 설치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 고도정보화사회의 인권 문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기업과 관련된 인권문제, 각종 사고와 관련된 안전문제 등이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이렇듯 생활 속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제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모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삶, 처한 환경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활 속 인권에 관한 담론은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구성원의 생활 속 인권에 대한 여러 의견을 공론화하고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지역 사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대전·충청 지역 각계각층의 인권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해 오던 생활 속 인권에 대한 담론을 공유하고,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늦게나마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설되어 지역 인권옹호 체계 강화와 생활 속 인권 실현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충청 지역의 인권 옹호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지역 인권옹호체계 강화, 생활 속 인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축/사

제66회 세계인권선언을 맞이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공동 인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부권에서 처음이고, 대전 인권사무소가 출범한 첫 해에 열리는 만큼 대전·충청권의 인권을 진단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특히 대전과 충청권의 인권증진을 위해 대전인권사무소 설립 추진과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저로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지역사회의 인권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인권정책을 실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 인권사무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충청권의 인권증진과 지역 인권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 장 우

프/로/그/램

일 정	주 요 내 용	발 표
개회식 14:00~14:20	개 회 사	정상철 충남대학교 총장
	환 영 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축 사	이상민 국회의원, 이장우 국회의원
기조발표 14:20~14:40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생활인권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	박광섭 충남대학교 부총장
주제 1 14:40~15:20	발표 1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회사생활과 인권)	정응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 토론 1-1	박행렬 대전대학교 교수
	전문가 토론 1-2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조실장
	전문가 토론 1-3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주제1 관련 15:20~15:30	질의 응답	
주제 2 15:30~16:10	발표 2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전문가 토론 2-1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전문가 토론 2-2	진진식 한겨레신문 기자
	전문가 토론 2-3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주제2 관련 16:10~16:20	질의 응답	
주제 3 16:20~17:00	발표 3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
	전문가 토론 3-1	오영달 충남대학교 교수
	전문가 토론 3-2	음명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전문가 토론 3-3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국장
주제3 관련 17:00~17:10	질의 응답	
종합토론 17:10~ 17:20	토론내용 정리 및 폐회 (좌장)	

목차

기조발표

-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생활인권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 3
- ▶ 박광섭 충남대학교 부총장

주제발표 1

-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회사생활과 인권 - 7
- ▶ 정응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가 토론 1-1 박행렬 대전대학교 교수..... 2
- 전문가 토론 1-2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초실장.....13
- 전문가 토론 1-3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33

주제발표 2

-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93
- ▶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전문가 토론 2-1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75
- 전문가 토론 2-2 전진식 한겨레신문 기자..... 6
- 전문가 토론 2-3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76

주제발표 3

-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77
- ▶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
- 전문가 토론 3-1 오영달 충남대학교 교수..... 9
- 전문가 토론 3-2 음명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79
- 전문가 토론 3-3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국장..... 11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
회



기조발표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생활인권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

박광섭 충남대학교 부총장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생활인권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

박 광 섭

충남대학교 부총장

I. 서론

인권이란 국가와 실정법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 또는 도덕적 권리로 보편성, 도덕성, 근본성, 우월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여 인권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국가의 노력으로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UN 등 국제사회와 국가가 시민적·정치적 차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권 보호 체계를 도입하였지만, 생명위협,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노인 학대 등 폭력이나 인종, 종교, 신분, 성별, 나이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 침해가 갖가지 형태로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 인권 실행의 주요한 현장인 지역 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그리고 인권 관련 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 즉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인권도시를 구현할 타당성과 비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인권사무소의 출범과 제66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속에서의 인권문화조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의 생활인권 문제는 더 이상 특정한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당면 과제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 발전하는 대학과 시민단체의 역할 또한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생활인권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특정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이 반영되면서 역사적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그 내용이 제1세대 인권, 제2세대 인권, 제3세대 인권으로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인권의 개념이 국가가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충족시키는 ‘탄압 패러다임’에서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웰빙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제1세대 인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로 국가의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거나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리이며,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 사회적 평등을 기초로 배분적 정의에 근거하여 가치의 생산과 자원의 배분에서 형평성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하며, 제3세대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연대의 권리로 인민의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과 같은 집단적 권리를 말한다. 제1세대와 제2세대 인권은 법적 강제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하여 실현됨에 반해 제3세대 인권은 사회동반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집단성을 띠며 권리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 냉전체제 종식과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 경제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 노동 및 시민사회 운동역량의 강화로 정치적, 경제적 권리 신장 등의 인권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인권의 문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박탈과 억압에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평등 및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확대 전환되어 생활 속의 인권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인권의 개념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의 문제가 인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통합적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청년실업,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에 따른 인권침해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 인권침해와 사생활 노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다문화 가정, 새터민, 장애인, 노인, 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의 문제가 인권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자유권 측면에서는 시민참여,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차별해소,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주거, 일조권, 교통, 소음 등)에서 인권개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UN에서도 인권에 대한 정책이 차별과 관련된 생활 속의 인권 문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인권의식의 향상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생활 속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증진 방안

1)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중요성

인권 보호와 증진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언제나 확인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실현의 노력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 전개되고 있음은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침해의 주체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행정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무관심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호의 주체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즉 인권침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공간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해야 할 곳이다. 국제사회와 국가를 통하여 인권이 실현되고 그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나 증진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최소 단위로서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상

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인권증진을 실행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특성은 인권실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의 전반에 인권문화를 수용한다면 이들 사이에 강한 동질성과 응집력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한 유대감은 이웃을 배려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빠르게 확립하는데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인권 증진 방안

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가치를 도시운영과 시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범지역적 차원의 인권종합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증진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운영 모델을 도출하여 인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증진, 인권 관련 법령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종합계획과 연계망 강화, 철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등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범주의 인프라 구축,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강화, 인권교육 자료 개발, 인권교육 홍보 강화 등 인권 친화적 문화 형성, 인권단체와 인권 협력체계 구축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수립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인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전담부서의 설치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인권발전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발전이 미흡한 것은 인권 전담기구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권관련 업무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청소년 등 관련 분야가 광대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 광주 등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는 대부분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다.

따라서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담당관 또는 과 단위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전담부서는 인권 관련 실태조사, 시민인권옹호관(옴브즈맨) 운영 및 업무 지원,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권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들은 범죄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조사 및 구제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현장에서 행정적 제도를 통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부터 소외 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나 서울, 광주 등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적 조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옴브즈맨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하여 상담, 조사, 개선 권고하고 그 권한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인권정책위원회의 역할 강화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제도화를 위하여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인권정책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 관련 사항은 정치, 경제, 복지, 환경 등 많은 영역에 관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인권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인권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의 내용에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

한 내용을 인권정책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에 대한 자문의 기능도 부여하여 인권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정책위원회가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정책위원회가 인권정책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의 역할을 탈피하여 시민, 인권단체 활동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대회나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가교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기업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규범화 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 경영상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인권행정을 실천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기업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선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기업의 인권경영 지수를 조달에 반영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 시 재무건전성,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인권 보장 활동에 부정적인 업체를 배제하는 방안이나 대형공사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에 산재율을 포함하여 인권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사 계약 시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대학의 인권 증진 방안

1)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권 증진

대학은 본질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전문가를 다른 어떤 조직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력과 예산상의 한계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한 인권 증진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교육의 실시 및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범의 실천을 위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연계가 인권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직접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대학에 위탁을 주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에 대학의 인권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인권정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등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사항은 정치, 경제, 복지, 환경 등 많은 영역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명이내의 소수로 구성되는(대전광역시의 경우 15명 이내) 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통하여 대학의 전문가들이 인권정책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위원수의 확대가 곤란하다면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대학의 인권관련 전담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전담부서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사회단체나 기관 등에서도 할 수 있지만, 활동의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각종 인권 친화적 시민강좌, 학교선생님 등 교육담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홍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은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대학에 적합한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인권보장 및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정책이나 위원회의 활동을 대학에서 홍보한다면 그 효과 또한 배가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관련 교육은 그 특성상 대학에서 전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학의 각종 교육관련 설비와 자료,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권관련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교육효과는 물론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피해자에 보호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관련 종사자 양성 및 실무교육, 상담과 치료 등을 대학에서 담당하여 대학의 봉사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부터 소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행정작용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노동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대학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구성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옴브즈맨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구성원의 인권 증진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은 대학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다. 대학에서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 또한 대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학 구성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처리, 인권침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의 조정, 대학 구성원인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소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화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내의 인권 전담부서는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에 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전담부서는 대학의 구성원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사

회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학의 인권관련 전담부서는 각 인권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사전 인권침해 방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학의 인권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충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각 대학에서 인권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인권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한계로 인하여 대학 내의 인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학에서 여러 정책 중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과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을 통한 인권 증진

대학의 목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장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학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설강된 과목은 법학개론이나 생활법률 등으로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간접적으로 인권을 교육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권의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과목(예를 들면 인권과 법, 범죄와 인권 등)의 설강과 그에 따른 교수진의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인권관련 단체의 인권 증진 방안

인권의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별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즉 인권은 취약계층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기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권리 충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미비한 수준으로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주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인권 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관련 정보나 지식의 원활한 공유를 통하여 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즉 인권현장 감시 및 모니터링, 생활 속 시민 인권정책 제안, 인권자원봉사, 인권정책 평가단 등 활동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인권시민디렉터 자격을 부여하고 최소 활동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부녀회, 아파트단위 주민 조직을 중심으로 생활 속 인권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시민 참여 인권행정 운영,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시민참여 인권행정 운영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권가치 공동체로서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의 지속적 교류를 시행하고 인권 침해 시 시민 주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고,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인권이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지역 간, 도시 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 인권 협력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새로운 이념과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인권은 가까운 곳,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인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생활인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과 인권단체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환경 조성은 가장 기본적 의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증진하는 인권 제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인권옴부즈맨제도와 인권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기업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교육적 측면에서 장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도 경주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조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관련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인권단체와의 MOU 체결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도출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
회



1 주제발표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회사생활과 인권-

정응기 충남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전문가 토론 1-1 박행렬 대전대학교 교수
- 전문가 토론 1-2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초실장
- 전문가 토론 1-3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회사생활과 인권 -

정 응 기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 현대사회에서 회사는 개인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 되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며, 가족 구성원보다 회사동료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나아가 회사는 한 국가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 회사는, 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함으로써 인류생존의 물질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② 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주요한 소득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 이렇듯 회사는 개인의 행복과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반면에, 회사는 인권침해(특히, 근로자의 기본권 침해)와 환경훼손,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경제적인 힘과 현지정부의 묵인 아래 인권침해가 문제되기도 하였다.¹⁾

1) 1996년 미국 잡지 '라이프'에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충격적인 사진이 실리자 나이키를 비롯한 스포츠 브랜드들은 아동노동을 사용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대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지역에서 로알더치 셸(Royal Dutch Shell)을 비롯한 거대 석유기업들이 유전개발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고니족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생존권 위협과 환경파괴의 위협 등을 이유로 유전개발에 반대하였고 나이지리아 정부는 반대운동주민들을 탄압하는데 군대를 동원하였다. 기업의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투입된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하였고, 1995년 11월 유전개발 반대운동조직인 '오고니족의 생존을 위한 운동(MOSOP, Movement for the Survival of Ogoni People)'을 이끌던 켄 사로 위와(KenSaro-Wiwa)를 비롯한 오고니족 9명이 군사법정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우리나라 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의 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군부독재 세력과 연루된 사실 때문에 국제인권운동의 표적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외, 인권경영의 이해: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2010; 조효제, 인권경영의 모색, 아세아연구 제51권 제3호, 2008.

-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기구들과 각국의 인권기구 및 NGO에 의하여 새로운 인권규범이 제정되었고, 인권경영을 강조하고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²⁾
- 회사원의 행복과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본질을 파악하고, 회사에서 회사원이 차지하는 지위와 회사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 발표문은 회사 내부적 인권문제에 천착한다. 회사 내부의 인권문제는 회사구성원이 회사 내부에서 차별받지 않은 권리, 건강권, 작업장 감시 등의 사항들을 포괄한다.
- 다만, 이 발표문은 이러한 구체적인 인권문제와 현상,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지는 않고, 회사 내부의 인권 보장을 위한 생활적·절차적 방법, 즉, 회사 내부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에 근거하여 인권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이는 바로 회사의 내부 구성원(일상용어로는 “회사원”)의 참여권에 관한 것이다.
-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 근로자의 대부분은 이른바 ‘회사원’이다. 회사는 회사원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그러나 회사원은 자신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회사의 결정과 집행으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때로는 회사원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현실을 본다.³⁾

- 2) 예를 들면, 유엔의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유엔의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UN Business and Human Rights Framework) 및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Business and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Guidance of Social Responsibility) ISO 26000,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ILO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및 그 후속조치(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nd its Follow-up) 등이 그것이다. 이를 자세히 소개하는 글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2013; 김인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적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0호, 한국법학원, 2014; 이상수, 기업과 인권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법과사회 제44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3 등이 있다.
- 3) 한국중공업(이후 두산중공업에 인수됨)의 숙련노동자 배달호는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공장 한 귀퉁이에서 분신으로 세상을 등졌다. 자유롭고 인간다운 회사를 꿈꾸었던 그는, 두 딸의 그리운 아버지이자 원망스런 남편이었던 그는, 왜 18년 동안 드나들었던 회사의 공장 길목에 그을린 자국으로 남았는가? 근로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임금 기압류의 결과 그가 세상을 등진 이튿날 그의 월급봉투에 찍힌 돈은 단돈 2만 5천원이었다고 한다. 2000년 한국중공업의 민영화와 그 이후 몇 년 동안의 ‘회사의 변화는 한 근로자의 죽음과, 수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고통과, 당시 두산그룹 회장이었던 박용오의 자살

- 인간이 존엄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운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10조). 회사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회사원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절차적 대안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회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회사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회사원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인가?
- 이 발표문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검토와 제안을 담고 있다.

II. 회사의 본질과 인권

1. 경제적 측면에서 본 회사의 본질

가. 기업으로서의 회사

- 경제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는 기업이다. 즉, 회사는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조직이다.
- 그 중에서 주식회사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과 회사원들이 투입하는 노동을 결합하여 사회적 생산을 조직하고,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이윤을 실현하며, 이를 주주와 회사원에게 소득으로 분배하는 기업이다.⁴⁾

나. 영리활동의 참여자

- 회사는 영리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상법 제169조).

(2009년 11월 자살합)과, 민영화 과정비리로 인한 당시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의 구속(200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실형 선고)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김순천, 인간의 꿈: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평전, 후마니타스, 2011.

- 4) '기업'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경제학적 개념으로는 바로 이러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생산을 조직화하는 방법에는, ① 시장(market)을 통한 방법과 ② 기업이라는 조직(organization)을 통한 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을 통한 방법이란 생산요소의 소유자들이 생산적 협동을 위하여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일시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지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hierarchy)로 전환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초 위에서 생산활동에 계속적으로 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분업으로써 생산적 협동질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는 기업이라는 조직(organization)을 통한 방법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이러한 기업 중 주요한 것들은 회사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0, 제6편 제1장 참조.

- 회사의 이익의 원천은 기업 활동, 즉,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유통이다.
- 이러한 회사의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에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원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주가 제공하는 자본만으로는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고 반드시 회사원의 노동이 결합되어야 한다.
- 회사원인 근로자는 회사의 이윤창출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회사의 구성원이므로 회사의 영리활동과 이익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정당한 몫을 가져야 한다.

다. 근로의 중요성

- 회사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중에서도 '노동'이라는 창조적인 활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자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는 고귀한 요소이다.
- 회사의 이윤은, 첫째, 회사의 인적 자본의 효율성, 즉 경영자와 근로자의 창의성으로, 둘째, 물적 자본의 원활한 조달로써 달성될 수 있다. 즉, 회사의 '영리성'의 기본적인 의미인 '이익의 추구'는 회사기업의 생산성을 최적화를 통해 달성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주체적 생산요소인 '노동'의 자발성과 효율성에 달려 있다.
- 노동은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 요소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 인적 요소인 노동의 질과 근로자의 자발성 및 창조성이 사회의 생산성을 결정하고 기업의 성패를 가름한다(효율성의 측면).
- 또한 불로소득자보다는 창조적 노동을 하는 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믿음에 기초한다(정당성의 측면).

라. 소결

- 회사는 회사에 자원을 투입하는 주주와 회사원들에게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제공한다.
- 회사는 이로써 사회 전체와 개별 회사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수행하려면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원(근로자)의 동등한 참여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정치적 측면

가. 회사의 정치적 의미

- 회사는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기능과 개인의 자유와 민주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⁵⁾
- 회사는 회사원이 직접 참여하여 일하는 조직으로서 일종의 정치체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 국가의 권위(authority)에 복종하는 국민이 국가의 정치체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회사의 권위(authority)에 복종하는 회사원은 회사라는 정치체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나. 회사와 민주주의

- 회사는 내부적인 관계에서 구성원의 개인적인 선택과 요구가 표출되고, 이를 통하여 집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체제(political institution)이다.⁶⁾
- 달리 말하면, 회사는 내부관계에서 개별구성원의 개인적·사적 요구와 회사 전체로서의 집단적 이익이 교차하고 조정되는 체제인 것이다.⁷⁾
- 따라서 회사의 내부지배구조는 민주주의원칙에 합당해야 한다.⁸⁾
- 우선 회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은 오직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만이 그 결정에 복종하기 때문이다.⁹⁾
-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은 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 즉, 회사의 민주적인 내부지배구조에는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동등한 절차적 보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¹⁰⁾

5) Ripken Susanna, Corporations are People too: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the Corporate Personhood Puzzle, 15 Fordham J. Corp. & Fin. L. 97, 2009-2010, p140-142

6) Bottomley Stephen, Constitutional Corporation: Rethinking Corporate Governance, Ashgate, 2007, pp.12.

7) Bottomley, op. cit., pp47.

8) Dahl Robert, "Procedural Democracy", Philosophy, Politics and Society, Yale University Press, 1979, pp.97.

9) Dahl Robert, op. cit., pp.99.

- 이로써 지배를 받는 자가 지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충족될 수 있다.

다. 소결

- 회사는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authority)를 가진다.
- 따라서 그러한 결정은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대표는 구성원들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구성원들이 그 결정 또는 선출을 함에 있어서는 동등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회사의 사회적 의미

- 회사는 단순히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넘어 구성원의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공동체로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성과 안정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 회사의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이윤이 창출되지 못하면 구성원과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회사 자체가 생존하기 어렵다.
- 다만, 이윤의 창출이라는 목표는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과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수단적(instrumental)이고 기본적인(foundational) 목표일뿐이므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
- 이윤이 회사의 존속의 조건으로 강조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가 배타적인 목표가 된다면 회사가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10) Dahl Robert, op. cit., pp.100.

나. 회사의 문화적 의미

- 회사는 조직적으로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 내지 총합이 아니라, 구성원인 개인들의 행동에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제공한다.
- 개별 회사의 특성과 조직문화, 그리고 가치기준은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 회사문화가 회사 내에서의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므로 올바른 회사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좌절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¹¹⁾

다. 소결

- 회사는 투자의 원천으로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정직한 고용자로서, 환경의 책임있는 관리자로서, 따뜻한 기부자로서, 공정한 경쟁자로서, 그리고 혁신적인 기획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III. 회사원의 인권

1. 회사원의 의의

- ‘회사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른다.¹²⁾
- 회사원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괄하며, 경영자의 경영활동과 영업을 보조하는 직원도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사원에 포함된다.

2. 회사원의 지위

11) Ripken, op. cit., pp.135-136.

12)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3409700>

- 위와 같이 회사원은 근로자인데, 법적으로는 회사의 구성원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만을 ‘사원’이라고 한다.
- 그러나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들뿐만 아니라, 회사원, 즉 근로자도 회사의 영리활동에 불가결한 요소인 노동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법은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하고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현실의 ‘회사원’과 법의 ‘사원’이 너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회사원의 참여권

- 현행 회사법이나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회사원인 근로자는 별다른 참여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 그리고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자본의 제공자 중 일부인 주주들이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는 방식에 의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뿐, 근로자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¹³⁾
- 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우선에 놓는 경향이 강하고 회사법 이론들도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그 결과 근로자의 지위 불안정해지고 능동성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산업평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 인류발전의 기본 조건인 사회적 생산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 근로자의 권리는 주로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만,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회사법상의 행위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아무런 정보와 보호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¹⁴⁾

13) 독일의 경우 1951년에 제정된 모탄공동결정법(Motan-Mitbestimmungsgesetz), 1952년에 제정된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Law on Codetermination) 등에 의하여 일정한 수의 근로자 대표가 감독이사회(Aufsichtsrat, Supervisory Board)에 참여하고,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Vorstand, Executive Board)의 구성원인 경영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용자의 경영방침에 대한 제안, 법령 및 협약 집행의 감시, 고충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광택, 종업원 경영참여제도의 도입과 과제, 기업법연구 제13집, 2003, 27면. 독일 이외에도 많은 EU 국가들이 위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의 회사법(公司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는 회사의 종업원대표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는 종업원대표는 종업원대표회의, 종업원회의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회사종업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동법 제109조).

- 그 결과 이러한 거래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노사대립을 관찰할 수 있다.¹⁵⁾
- 회사에 자원을 투입하는 구성원들은 각자 그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몫을 보장받아야 한다. 각 구성원들은 분배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과 생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측면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근로자들도 기업에서의 지위에 걸맞게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참여권의 근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달리 표현하면 인격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야 한다.¹⁶⁾

- 14) 대법원은 일관하여,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자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따라서 “합병,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15)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극심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쌍용자동차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로 1998년에 중국 상하이차에 인수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로 쌍용자동차의 유동성이 악화되자, 노조와 경영진은 일체의 복지혜택을 반납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2009년초에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쌍용자동차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로 2019명이 희망퇴직, 459명은 무급휴직, 3명은 영업직 전환, 165명은 정리해고되었다.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근로자측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년 11월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25명에 달한다.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4>) 참조.
- 16) 헌법재판소 1990. 9. 10. 89헌마82 결정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자원을 투입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場)이다. 다수의 구성원의 결합체인 회사의 지배·통제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¹⁷⁾
- 이는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구성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동등한 투표권(equal vote)을 가져야 한다.¹⁸⁾ 다음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적인 참여(effective participation)가 보장되어야 한다.¹⁹⁾

IV. 결론

- 회사가 사회적·경제적 인권의 실현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권보장을 위한 커다란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가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을 최적화하는 것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 동시에 회사의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권과 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이해충돌을 공평하게 해결하고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의 보장하는 것도 회사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 이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회사의 경영과 이익분배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 요컨대, 회사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을 최적화하면서도 회사 구성원의 이익보호와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회사의 인권존중책임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17) 회사의 권위에 구속되지 않고 단지 회사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는 회사와의 관계를 끝내는 방법(exit right)을 포함하여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법률이나 정부의 조치로 보호될 수 있다. 회사원(근로자)은 단순히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회사의 권위(authority)에 복종하는 구성원(member)이다. 따라서 단순한 계약에 의한 보호를 넘어 내부 절차에의 참여를 통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18) Dahl, op. cit., pp.101.

19) Dahl, op. cit., pp.102.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회사생활과 인권 -

박 행 렬

대전대학교 교수

1. 인권, 법제도의 문제인가? 의식의 문제인가?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의 문제는 1970년대에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유엔에 의해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즉 기업의 세계화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특히 다국적기업이 현지국가(특히 개도국)에 진출하여 행했던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들(강제노동, 아동노동, 고용 및 업무에서의 차별, 위험한 업무환경, 비인간적 대우, 환경침해, 뇌물 등 부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창안한 개념이다.¹⁾

국제사회의 이러한 ‘기업과 인권’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2008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에서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하여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 입문(이하 ‘인권경영 입문’)'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인권경영 입문’을 보면, 각종 차별(성별, 장애, 나이, 학력, 학벌, 비정규직, 인종 등), 작업장 건강권, 노동자 감시문제 등 다양한 인권침해유형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며, 세계 인권경영의 흐름과 인권 관련 법령 등도 소개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더 새로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스크에 작업장 건강권, 첨단 기기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문제, 각종 차별문제 등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생각보다 큰 진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제도의 문제인

1) 존 제러드 러기(이상수 옮김), 『기업과 인권』, 필맥, pp.6-11.

가? 아니면 의식의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식의 문제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록 그러한 법률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는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사회가 인권 선진국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제도적 측면보다는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인권의식 부재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회사 구성원(회사원)의 참여권에 대하여

오늘 발표문은 회사와 인권문제 중 회사내부 구성원의 ‘참여권’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회사 내부 구성원의 참여권 문제는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인권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논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실제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 대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노동조합과 회사 경영진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사측은 노조의 적절한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100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사용자 50%, 근로자 50%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갖춘 것은 독일이 유일하다.²⁾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참여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명 이상 10명 이하)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월마다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사항으로 16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http://kyoposhinmun.com> 2013년08월20일 15시55분 <847호 5면> 보도.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
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이상에서 보듯이 협의사항의 대부분이 근로자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 이 ‘노사협의회’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인권문제를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

3. 제언

첫째,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기업이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및 홍보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로 되어 있지만,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

3) 그러나 이 법률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의 고충문제,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 행사방법의 불명확성 등 아직 많은 입법적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2013년도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보호와 증진이 기업이익에 상충된다는 인식을 견지하는 한, 기업은 스스로 인권보호와 증진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권이 독일기업의 이익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듯이, 또한 볼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2013년도 한 강연에서 “독일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한 폭스바겐은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꼽힌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 결국은 기업이익에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기업이 인권보호와 증진에 일정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담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법적 규제와 지속적인 감시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적으로 기업은 스스로 인권보호와 증진 주체가 되는 경우보다는 인권침해의 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것은 지배적 구조관계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은 항상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관련 많은 입법들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자의 인권을 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을 찾아 개선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관련 직장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앞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현행 노사협의회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노사협의회제도는 사용자와의 관계일 뿐, 실제 직장생활 속에서의 인권침해는 근로자 상호간(주로 상하 근로자 간)에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은 그 기업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우리는 현재 매년 직장윤리교육을 몇 시간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주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한 것이다. 직장윤리교육도 결국 인권침해의 한 태양에 대한 교육이므로 이 시간을 오히려 보다 포괄적인 인권교육 시간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토론 요지 : 회사와 인권

윤 기 석

대전발전연구원 기초실장

현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 사회 구성원인 개인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 보다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한국인들의 근로 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1.3배에 달하고 근로 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6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직장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 다고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님. 이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근무환경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한다면 노동의 생산성은 물론이거니와 한 개인의 인간적인 삶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이 글에서 발표하는 주요 의제 중에서 회사의 내부적 인권문제와 회사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우리나라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이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강화를 해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그리고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즉, 근로자의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정부(고용노동부)는 감독의 권한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함

둘째, 노동조합 설치를 통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즉, 노동 삼권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설명하는데 이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 3권이라고도 함. 또한 노동자의 권익(權益)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

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나 한국 헌법 제33조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음. 참고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 (예: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근로 3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사익추구와 생산 활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기업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인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문제발생시 대화와 경청 그리고 배려의 자세로 올바른 기업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인권의 생활화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안 성 율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먼저 이 번 토론회의 발제문을 작성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응기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제자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기업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종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등 우리 삶의 일 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이러한 회사의 본질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 분석하고 회사원들의 참여권을 강조하신 점은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회사원의 참여권과 관련하여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지 하다시피 회사원들은 회사의 경영자나 주주들과는 달리 회사법상 회사의 경영에 있어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재산손해라는 측면에서, 회사의 경영자는 회사법상의 여러 가지 손해배상책임 등에 의해 회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회사원들은 회사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원과 회사의 주주 내지는 경영자들을 같은 지위에 놓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자께서는 기업과 인권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 중 기업내부의 구성원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기업과 인권 논의의 국제적 흐름은 유엔에서 승인한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자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문에 덧붙여 이에 대해 간단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권개념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차원에서 등장하였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인권보장의 주체는 국가이고 기업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때로는 기업이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초기

인권개념의 등장시 예측하지 못했던 기업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통제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005년 7월 존 러기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비즈니스 기업 문제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하였습니다. 동 교수는 세계 여러 NGO, 국제기구 등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07년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200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을 위한 보호, 존중, 구제 정책프레임워크는 적절한 정책, 규제, 심리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제3자에 의해 가해지는 인권침해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상세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 인권 피해자들에 의한 사법, 비사법적 모두를 포괄한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프레임워크에서는 기업의 인권보호 의무를 주장하지 않고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의 보장의 직접적인 주체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기업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내지는 거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프레임워크의 3가지 중에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은 이미 거의 모든 기업, 산업의 CSR 이니셔티브에서 인식되고 있는데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의 범위는 기업의 자체 사업활동 및 사업파트너, 공급망을 이루는 협력업체들, 다른 비국가 주체 등과 같은 다른 당사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영향에 의해 정의됩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거의 모든 범위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모든 권리에 적용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국가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동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 프레임워크는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침해 리스크 관리에 상세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세한 주의를 기업이 인권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하며 주의 깊게 다루는 단계들을 표현합니다. 기업의 상세한 주의의무는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헌신을 명확히 밝히는 정책선언, 기업의 활동 및 관계가 내포한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 잠재적 영향에 대한 주기적 평가, 그러한 헌신과 평가를 내부통제 및 감독시스템으로의 통합, 통합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인권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연루(complicity)를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연루의 사법적 의의는 대부분 국제 범죄의 교사 및 방조분야에서 명확히 설명되어 있는데, 기업인지

하에 범죄행위에 실제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나 장려 제공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은 인권존중에 대한 상세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 이러한 연루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과 인권을 위한 보호, 존중, 구제 정책 프레임워크”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여러 국가나 기관 등에서 동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는데 OECD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에 이를 새로 인권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영국의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상세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패소판정을 내리고 이 기업에게 효과적인 기업책임정책을 이행하도록 제안함에 있어 해당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식을 참조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 의회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발의를 통해 “호주 정부가 호주 국내에서나 해외 사업시에는 항상 권리에 기반한 고충처리 구제책을 개발하고 호주 기업이 사업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장려해줄 것을” 호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유엔은 위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실행지침 개발을 위해 존러기 특별대표의 임기를 2011년까지 연장하였는데, 동 대표는 2011년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1년 6월 위 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에서의 논의내용과 성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위와 같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 논의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도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량 세계 10위 내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세계인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에서 승인한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실행지침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큰 밑그림을 그려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 등을 통해 위 지침을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정부가 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시와 조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인권친화적인 활동으로 국민들의 삶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
회



2 주제발표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전문가 토론 2-1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 전문가 토론 2-2 전진식 한겨레신문 기자
- 전문가 토론 2-3 오창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인권소외 · 사각지대, ‘지역’ 운동의 경험과 사례 중심으로 -

이 상 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I . 들어가며

- 민선자치 부활 이후에도 ‘중앙’ 대 ‘지방’의 관계에서 여전한 중앙 집권구조 및 압축성 장기를 거치며 형성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관계에서 수도권 초 일극집중의 구조, 즉 과도한 집권과 집중은 권력관계와 공간적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균형과 불균등 관계 파생
 - 기회불균등 초래(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정보 등 사회 전반)
 - 삶의 불 균질한 양상 구조화(예컨대 수도권 대 비수도권, 도시 대 농어촌 등)
 - 권리관계에서 종속성
 -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아닌 관료자치 및 토호자치의 속성
 - * 분권, 분산, 자치의 한계
-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과 효율 만능 풍조에서 지역의 패퇴 현상
- 초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추세 등의 인구구조 및 FTA 농산물 개방으로 농촌사회 과소와 황폐 가속화, 사회양극화의 악화 현상
 - 고령화로 단절적 사회
 - 다문화가정, 이주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차별적 여건
 - 장애인의 이동권 및 복지전달체계 취약
 - 귀농·귀촌인과의 이질성 파생
 - * 지역의 취약한 여건을 이용하여 개발욕구를 자극하고 부도덕한 자본의 속성으로 지역 공동체를 농단함. 예컨대 충남지역이 전력생산기지가 되고, 곳곳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거나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안전의 권리침해 현상이 곳곳에서 야기

- 지역 시민사회운동의 허약한 기반
- 이처럼 기본권 사각지대의 지역사회 가까이 국가기관인 ‘인권사무소’가 개소하고,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의 확장과 인권감수성의 제고 및 교육의 비중을 담고 있어 기대
- 이에 본 원고는¹⁾ 지역적 특수성과 능동적 인권 개념 확장의 당위성 관점에서 경험적 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영역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전망을 약술하고자 함.

II. 충청남도 인권정책 과정²⁾과 지역시민사회의 참여

-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이 수립되기까지 충남도의 인권정책 수립과정에 지역시민사회 활동가 참여
 - 특히,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인권증진위원회’에 도의회 의원 1인과 집행부 2인이 포함된 15인 중, 5인이 참여함.
김지훈(충남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우삼열(아산외국인노동자 센터장), 유요열(홍성 YMCA 이사장), 이상재(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진경아(부위원장/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 ‘충남인권선언문 작성위원회’는 충남시민재단이 추천한 5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105인’도민참여단을 조직하여 초안 확정함.

1. 기본계획안 약술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배경>

역사적으로 이어진 충남 인권의식의 종합적인 현재 실현화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1) 국가인권위원회,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등을 참조
2)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참조, 인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2012~2016)」의 지역적 반영
민선6기 도정이념의 반영

<목적>

인권 행복충만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
충남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
충남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시군에게 인권감수성 향상방안을 제시

2) 계획의 범위

<시간>

기간 : 2015~2019년(5년간)

<공간>

구역 : 충청남도 전역(15개 시·군)

<내용>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이주민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국내외 인권행정 추진 사례조사(문헌조사 실시)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인권 행복충만 충남」 달성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향 도출
기본계획 원칙으로 한 「인권 행복충만 충남 기본계획」 수립
충남지역 특수성과 농촌(농어업인의 인권포함)과 도시를 구분하여 실행력 담보한 세부추
진 실천계획
도는 시군을 견인할 입장으로 道답게 시·군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방안 제시

3) 계획수립과정

가. 조례제정 및 충청남도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 충청남도 도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2.5.10)』 제정

- 나.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협의
- 다. 착수보고회
- 라. 인권계획을 위한 워크숍
- 마. 사회적 약자 인권항목 및 과제도출
- 바. 인권분야별 주민, 전문가, 관계자 의견수렴
- 사. 인권제도, 인권거버넌스, 인권문화 부문 토론회
- 아. 중간 보고회
- 자. 충남도 인권정책 T/F워크숍
- 차. 타 시도 인터뷰
- 카. 충남인권선언문 작성 및 105인회 구성
- 타. 도민공청회(1,2차)

2. 충남도민인권선언문 (2014.10.13 발표)

충남 도민 인권선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 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

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

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가 있다.

② 충청남도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① 충청남도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교육 받을 권리, 쉼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① 충청남도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① 충청남도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① 충청남도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① 충청남도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

는다.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체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특히, 인간답게 살 권리로서 ‘주민생활 기본선의 보장’, ‘건강에 관한 권리’ / 안전하게 살 권리로서 ‘안전에 관한 권리’, ‘환경에 관한 권리’ / 인권선언의 이행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III. 폐기물처리 시설 사례3)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실태

1) 개요

-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석면채굴의 역사, 1978년부터 석면광종으로 광권이 등록된 석면광산 터에 2001년 폐기물중간처리장이 청양군에 의해 허가, 주민들이 입어온 석면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피해 속출, 중피종암 사망자와 석면폐증 질환자 속출, 2014 검진에서도 20여명의 유소견 의심 환자 나타나는 등 피해의 지속

사망진단서			
발행번호 제 144 호 (진해읍안리)			
성명	바	성별	남·영
주민등록번호	40706-2		
사망연월일	년	월	일
본적소	충남 홍성군		
발병일시	년	월	일
사망일시	2012년 1월 24일 25시 11분(24시간제에 의한)		
사망장소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산리 572-7 장소 ①주택내 ②의료기관 ③시설기관(양로원, 코아원 등) ④D.O.A ⑤산입장 ⑥공로(도로, 차도)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사망의 종류	병사 ①의인사 ②교통사고 ③불의의 중독 ④불의의 추락 ⑤불의의 추락 ⑥불의의 익사 ⑦자살 ⑧타살 ⑨기타사고사 ⑩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	I (가)의 접사인 [진해읍안리] 사망부처 사망까지 기간 2 (나)중간생애사인 [중피종암] (다)선행사인 [중피종암]		
수술의 주요소견	수술의 주요소견		
사고발생일시	년	월	일
사고의 종류	①교통사고 ②불의의 중독 ③불의의 추락 ④불의의 익사 ⑤자살(방범기술) ⑥타살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사고발생 및 상황	주소 ①주택내 ②공공건물 ③산입장 ④공로(도로, 차도) ⑤휴양지 ⑥시설기관(양로원, 코아원 등) ⑦기타(구체적으로 기술) ⑧갈모름 상황 가. 근무중 나. 근무이외의 시간		
위와 같이 진단(원인)함 2012년 1월 24일 의료기관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료기관 72-3 명칭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진찰(검안)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1750 호 면허번호 제 1750 호 성명 윤 (서명 또는 인) 성명 윤 (서명 또는 인)			

수첩 번호 : 2011-A20-0089		진료·검사 내용	
성명	이기 (성별) 남	연월일	2012
생년월일	1935년 1월 1일	진료·검사 내용	CEA, HCG 등차등
주소	충남 홍성군 비평면	진료·검사 내용	CEA, HCG 등차등
진료·검사 내용	석면폐증 2급	진료·검사 내용	CEA, HCG 등차등
진료·검사 내용	2011년 4월 4일	진료·검사 내용	CEA, HCG 등차등
진료·검사 내용	2011년 4월 4일	진료·검사 내용	CEA, HCG 등차등
한국환경공단 이사			
문의전화 : 032-590-5032-5, 5041-2			

<석면 폐증 2급 질환자의 사례>

- * 2014년 검진에서도 석면 질환 유소견자만도 20여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음.

‘석면’이 유일한 원인인 중피종암 환자의 사례

- 해당 사업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양군이 가동 중인 석면광산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주, ‘비’ 환경)을 허가해주고, 수차에 걸쳐 보관한도를 증대시켜주거나, 사업자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방관함으로써 주민들의 권리침해의 합리적 의구심

3)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 활동과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내용

- 더욱이 동일 폐기물처리업자에 의해 2013.8. 해당 지역에 또 다른 ‘일반폐기물매립사업’(주,‘oo’)까지 신청된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군수)과 관련 부서 책임자(환경보호과장)를 찾아 문제 제기하였으나 ‘절차 상 문제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반응에 지역의 시민단체를 찾아 도움을 요청, 2001년 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이장인 원주민이 업체의 편에서 ‘허위사실’등으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역할 수행 및 허가 이후 해당 업체의 관리자 역할과 마을 ‘이장’을 겸하면서 장기간 주민들의 불만 관리
- 한편 해당업체의 허가 및 지도감독의 사무는 충남도가 청양군에 조례로 위임한 사무이므로 충남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2013년 12월부터 ‘주민감사청구’에 이어 ‘직무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책임회피와 방기 등으로 일관하여 오히려 해당업체로 하여금 증거인멸과 위장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권리침해 구제를 외면하여 그 피해는 계속됨.

2) 강정리 문제의 성격

-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는 1) 석면광산에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 신규로 추진되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이라는 3가지 사안이 겹쳐 있음.
- 석면광산위에 사업체(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가 허가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함. 주민의 생명과 안전 경시의 결정적 사례로 인용되고 있음.
- 또한 강정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에 여러 위법사실들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충남도 또한 청양군에 사무를 위임해 놓고 강정리 문제해결에 미온적이고 방임의 태도로 일관함.
- 주민들은 그동안 폐기물 불법매립(슬레이트 등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허용보관량 초과), 농지불법전용, 산림훼손, 석면원석 방치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현장은 중간처리업이 할 수 있는 ‘보관’이 아니라 사실상 매립이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음.
- 해당 업자는 마을 이장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마을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상황 무마.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3. 8 해당 부지에 현재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시작

3)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최초허가 당시(2001. 3. 5)에는 허용보관량이 1,500톤, 불과 5개월 후인 2001년 8월 28일 5,690톤으로 변경허가, 다시 2007년 7월 10일 21,690톤으로 변경허가됨.
- 2013년 12월 12일 주민감사청구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맡았으나 적극적인 감사의지를 보이지 않아 주민들과 갈등이 초래. 2014년 3월 6일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지불법전용 등의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굴착은 이뤄지지 않는 등 소극적인 감사에 그침. 결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업자에게 끌려다니는 식의 감사결과에 불과함. 위법혐의가 있어서 주민들이 집단 서명을 받아 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했는데, 위법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감사의지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음. 청양군이 위법행위를 방임하고 있었다면, 감사위원회가 청양군이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권한을 적극 행사하게 하여 굴착을 했어야 할 것임.
- 강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그동안 행정관청으로부터 수차례 과태료나 개선명령 등을 받았으나 이러한 처분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솜방망이 식의 처분에 불과하였음.
 - 2009년 7월 1일, 청양군은 업자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 / 2011년 10월 18일, 청양군은 업자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기준 부적합(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이유로 개선명령 / 2012년 6월 1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조치이행명령(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이행) / 2012년 11월 28일 ‘비산먼지발생억제 시설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부적합(방진덮개 설치 미흡.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2항)’을 이유로 개선명령 / 2013년 9월 23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으로 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 / 2013년 9월 24일, 같은 건으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영업대상폐기물 : 폐목재)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2013년 10월 25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반(건설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외 적치)으로 과태료 4,000,000원과 경고처분 / 2013년 12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으로 과태료 4,000,000원과 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목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림.
-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사실 외에도 폐기물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 불법매립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굴착 등을 현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도·점

검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에도 불이행함.

- 한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음에도 사실상 매립을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 허가 시에 정한 허용보관량은 일시보관을 의미하고 최종적인 매립으로 해석될 수는 없음. 그런데 해당업체는 건설폐기물 언덕이 만들어질 정도로 폐기물을 사실상 매립해 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불법매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해옴.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문제를 방치해 온 청양군, 그리고 본래 도지사의 업무임에도 이를 위임해 놓고 방임해 온 충청남도도 책임을 통감해야,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야, 애초에 이런 곳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난 것도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허용보관량을 늘려주면서 업자의 편의만 봐 준 것도 문제.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사실만 해도 가볍지 않은데 숨방망이식 행정처분만을 하고 있는 것의 이면에 거대한 비리 커넥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4) 문제의 해결 시도

- 청양군은 그동안 보인 행태로 볼 때에 강정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허가와 지도점검은 법령상 충청남도의 소관사항이므로 충남도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 그러나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미온적인 감사태도로 일관하였고, 시민단체 대책위가 제시한 직무이행명령을 마지못해 내려 놓고도 이를 수차례 연기해 주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음.
-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며, 강정리의 실태를 보면 당연한 요구임. 석면광산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음.
- 허가취소를 위해서는 불법매립 혐의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함.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와 취소근거 마련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허가취소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 나갈 필요성

- 현재로서는 허가취소 권한이 청양군에 있는데, 이 권한을 충청남도가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위임조례상의 위임사무에서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인·허가업무를 삭제하면 가능, 이것은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폐기물관리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 자칫 충청남도가 외부폐기물을 매립해주는 곳으로 전락할 현실적 우려
- 석면의 위험성, 불법매립 실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위한 증거자료 정리와 법률적 검토,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검토, 석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인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 해당 특별 기구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전적인 권한 행사 가능해야 함. 법률전문가, 석면전문가, 환경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므로 위원회 위원들은 법률, 석면, 환경, 건강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업자나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 등의 판단으로 제안하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강정리 석면과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자문형으로 출범하여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러 난관과 한계가 예상됨.
- 강정리 사태는 ‘돈보다 생명’이나 ‘생명보다 돈’이라는 선택의 문제임. 즉, ‘업자의 이익과 주민의 환경·건강·안전 중에 무엇을 중시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마땅함.

농촌지역의 일상적 환경·건강권 침해, ‘무방비’노출

- 무지와 편견을 악용하고, 비용과 저항 부담의 최소화 기대로 특히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남과 충북의 농산어촌이 이권으로 얼룩지고 광범위하고 안이하게 폐기물 등의 혐오시설장에 취약한 공간으로 전락하여 환경과 마을 공동체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
 -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폐기물매립장이 2016년 완료될 예정이면서 충남과 충북에 민간사업자들이 추진하는 폐기물매립장들이 들어서거나 추진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보이는 업체('에코000')가 실제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주민들을 매수·회유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행태가 충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 또한 폐기물매립장 인·허가권이 환경청(지정폐기물매립장)과 시·군(충남도 권한이나 사무위임조례로 시·군에 위임)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충남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정책도 없고 의지도 없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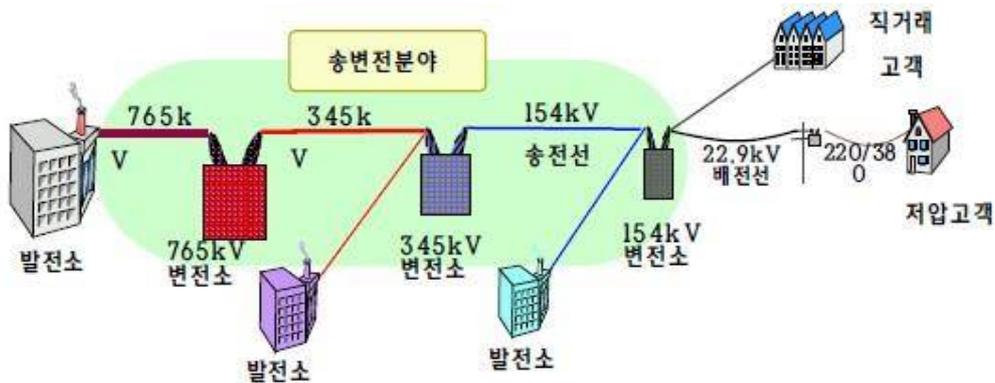
- 한편 최근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는 에어돔의 경우에 충북 제천에서 에어돔이 붕괴 하면서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제천의 경우에는 인.허가는 환경청에서 했는데, 사고 수습은 제천시가 해야 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 충남의 3곳(예산 궤곡리, 청양 강정리, 부여 은산면 대양리)도 모두 에어돔 방식이므로 동일한 사고 위험을 안고 있음.
-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이권구조, 그리고 매립장 인.허가과정, 지자체(충청남도)의 책임성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

* '에코000' 업체 관련

- 이 업체는 충남 부여에서 최근 6년 동안 지정폐기물매립장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해 왔음. 2012년부터는 부여군 은산면에서 이런 일을 해 왔음. 뒤에는 '00테크'라고 하는 큰 규모의 업체가 있고, '에코000'는 주민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금품 수수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함(실제로 소정의 금액 수수한 정황). 그러나 주민동의 등 역할 실패로 '00테크'의 수사의뢰에 의해 에코000의 대표자는 구속
- 한편 '에코000'는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로 2011년에 법인주소를 옮겨 강정리 건에도 일정 부분 개입해 온 것으로 추정됨. 강정리는 기존의 석면광산 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허가되어 영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곳에 2013년부터 다시 일반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고 있음. 사업주는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B'환경과는 별도로 '(주)00'라는 법인 명의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그런데 최근 확인한 결과, '에코000'가 'B'환경과 같은 주소로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에코000'가 강정리 건에도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에코000'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궤곡리에 3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매립장에도 관여되어 있음. 지금은 '00바이오텍'이라는 법인 명의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에 주민동의를 받는 작업은 '에코000'가 했음.
- 이처럼 '에코000'라는 업체가 주민동의를 받고 마을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공작'을 하면서 충남 곳곳의 마을들이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충청남도는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IV. 충남지역 전력생산기지화와 초고압 송전선의 문제⁴⁾

- 밀양송전탑 문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발전-송전 정책이 사회쟁점화
- 현 발전-송배전 시스템은 충남 서해안 ‘바닷가에 대규모로 화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초고압 송전선으로 소비지(주로 수도권 대도시와 산업체)까지 송전’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 발생



<그림> 송·배전의 개념도

-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발전부문이 차지)
-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해 입는 피해는 지역의 몫. 소비지에서는 아무 부담없이 전기 사용, 충남도의 전력자급률은 300%에 이르러 수요 공급의 불균등
- 송전선의 지중화 읍에서도 현격한 차등,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정작 생산기지인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농촌지역에서는 지중화율이 매우 저조하고, 예컨대 농촌마을을 관통하는 단거리 선로의 지중화 요구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거부되는 실태

4) ‘충남지역 초고압 송전선의 문제점과 정책과제’(하승수 변호사) 참조

<표> 행정구역별 지중화율(2010년 12월 기준)

번호	행정구역	선로길이 [C-km]			지중화율
		가공선로	지중선로	합계	
1	서울	124.4	823.6	947.9	86.9%
2	인천	270.1	395.2	665.3	59.4%
3	부산	451.3	326.2	777.6	42.0%
4	광주	199.9	110.1	309.9	35.5%
5	제주	348.6	180.0	528.6	34.0%
6	대구	430.5	164.3	594.8	27.6%
7	대전	298.1	112.9	411.0	27.5%
8	경기	4,482.0	529.6	5,011.6	10.6%
9	울산	740.5	33.8	774.3	4.4%
10	전북	2,000.4	83.4	2,083.8	4.0%
11	경남	3,190.1	79.4	3,269.4	2.4%
12	전남	3,024.7	68.2	3,092.8	2.2%
13	충북	1,838.2	24.1	1,862.3	1.3%
14	충남	3,030.5	35.0	3,065.5	1.1%
15	경북	4,070.9	35.7	4,106.5	0.9%
16	강원	3,238.7	9.9	3,248.7	0.3%
합계		27,739	3,011	30,750	9.8%

- 자료원 : 한국전력공사

● 충남 서해안 지역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일대에 들어선 화력발전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피해 문제와 더불어 초고압 송전선이 건설됨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

- 초고압 송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상 피해, 재산상 피해, 경관피해, 소음피해 등
- 초고압 송전선이 들어선 이후에 암 환자가 급증했다는 증언은 공통적,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신당진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송전선이 지나가는 서산시 팔봉면의 경우 송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73명 중에서 26명이 암이라는 주장
-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의 경우, 80여가구 150여명의 주민 중에서 현재 암 투병 중인 주민이 9명,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명이라는 보도
- 기타 소음, 전파장애, 조망장애 등 생활환경의 피해, 전자파에 의한 건강 침해우려, 지가하락, 농사피해와 가축들의 피해 사례도 제시되고 있음.

- 이처럼 발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큰 문제점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와 추진과정의 비민주성에 있음.
 - *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송·배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분쟁 조정법 등 유관 법제도의 개정이 요구됨.
 - * ‘송전선로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실태 분석, 송전선로 건설과정의 민주화,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보상의 합리화’ 및 기본권 침해 차원의 접근 필요성과 당위성

V. 인권과 지역시민사회의 역할 및 과제

= ‘사실’이 ‘정의’, 사실은 ‘현장’에, 현장은 곧 정의 =

-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 지역, 결혼 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차별금지 원칙’의 영역의 다수가 가장 취약한 곳, 그래서 더더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현재의 ‘지역사회’임.
- 지역 시민사회의 여건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 기준으로도 취약한 여건임에도 일상적으로 기본권의 체감과 체화, 인권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현장과 이슈의 특성에 조응하고, 시대적 가치의 소명의식으로 지역의제 과정에 대체로 능동적 역할을 자임함.
- 앞에서 소개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안에서 자본과 허가기관의 끊임없는 유착설, 발전-송·배전 시스템의 불공정성 등이 지역시민사회의 과제가 되고, 조직적 연대방식을 통해 주민공동체와 소통하고 또는 시민사회 간 연대와 협업으로 대응
 - * 예시, ‘강정리석면광산-폐기물업체 공동대책위원회’(대전충남녹색연합민주노동충남지역본부·전남충남도연맹·정의당충남도당·충남녹색당·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충남시국회의·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참여자치연대·충남환경운동연합통합진보당충남도당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청양시민연대 등)가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연대
- ‘사회적 경제 활성화네트워크’ 등의 활동
- 그러나 여전히 ‘충청-충남’이라는 지역 정서, 지역 시민사회 인적 자원 충원구조의 열악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과 훈련 기회 미비 및 특히 ‘인권’을 전담하는 단체 및 전담인력의 부재로 인한 ‘운동’차원의 인권사각지대

- 따라서 지역의 인권 사안이나 지자체의 인권정책의 적실한 개입에 한계

VI.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의 역할 제고와 기대

- 인권위 위상 복원 및 제고를 위한 사회 요구 기조에 반응해야 함. 신뢰기반 조성이 중요
 -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정신에 부합하고, 인권 침해 행위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을 주 업무에 충실해야 함. 특히 국가 권력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사상의 자유 신장 등에 적극적 대응
 - 사회양극화 및 극단적 신자유주의 폐해에 개입
- 대전인권사무소의 역할과 제언
 - 초기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과 교감에서 소홀한 부분 보완
 - 지역의 사회권적 기본권 현안에 능동적 대응과 권리의식 확장에 적극적 역할
 - 지역시민사회와의 정례적 소통과 협업 사안 발굴
 - 인권교육체계의 수립 및 실행
 - 현안주제 토론의 정례화
 - 현 조직규모의 한계 극복
 - 상징적이고 동일한 의제를 충청권 특정 또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 대비 발표 등으로 인권사안의 관심 유발과 점진적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
 - 언론과 대학 등 교육기관과의 교류로 홍보와 교육효과 증진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회사생활과 인권 -

홍 성 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1.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인권위원회)의 역할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5)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7)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조례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1.20. 제정)

-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성과 기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 (4)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4.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사항
5. 그 밖에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5) 제10조(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관련 실태 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센터에 제보·접수된 사항이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

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조사

4. 제3호에 따른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의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의 요구
 5.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6.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7.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8.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6) 제11조(충북도민 인권헌장) 도지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 도를 만들기 위하여 충북도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 (8) 제13조(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 기대¹⁾²⁾

- (1)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됨.
- (2)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새로운 가치로 자리 매김 되고 있음.
- (3)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4.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의 재·개정을 권고 함.
- (4) 2013년 기준 9개 광역자치단체와 21개 기초자치단체, 총 30곳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

4) 충청북도 인권정책 추진 목표와 내용³⁾

- (1) 목표 : 「인권존중」 가치 실현, 도민이 행복한 「인권 충북도」 구현

1)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말,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자료, 2013.4.
2) 안석모,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자료, 2013. 4., p.3
3) 제1차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2014.8.29., p.6

- 가)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과정부터 민·관거버넌스 구축
- 나)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인권행정 추진으로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

(2) 단계별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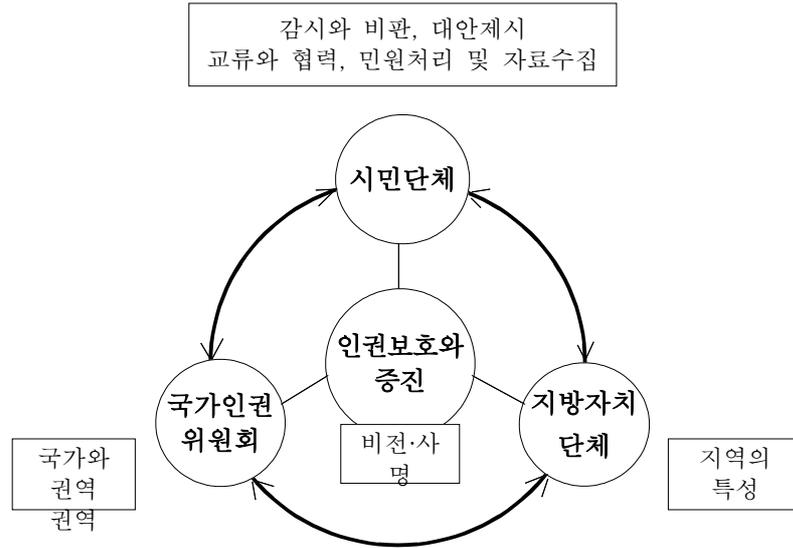
단계별	추진내용
준비단계 ('14.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 인권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각 지자체 인권업무 추진사례 수집·분석 -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범 실시 -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 정책연구과제 추진
검토단계 ('15.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의 바람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정책연구결과 반영) - 도민의 인권이해를 위한 홍보 인권교육 강화(전문교육과정 신설)
실행단계 ('1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권관련 집행기관(단체)간 공조 유지, 연계망 구축 인권센터 및 전담부서 설치 검토 및 추진
정착단계 ('17.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사례 접수, 상담, 조사 본격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추진 및 평가 인권현장 제정·선포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정착

5)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한계⁴⁾

- (1) 아직 지역사회 인권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높은 단계 아님.
- (2)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
- (3) 일선 공무원들이 인권제도나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음.
- (4)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 필요.

4)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말,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자료, 2013.4.

2.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1) 감시와 비판

- (1)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인권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
- (2) 특히 시민단체는 인권영역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전문적 시각에서 접근 가능.
- (3) 인권시민단체간 연대체를 구성(예, 충북인권연대)하여 공동 활동

2) 대안 제시

- (1) 감시와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
- (2)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역할의 성격과 범주, 실현 방법 등에 대한 대안 제시.

3) 교류와 협력

- (1)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담당

자와 교류, 협력(예, 민관 거버넌스 구성)

(2) 인권시민단체간 교류와 협력.

4) 민원처리 및 자료수집

(1) 지역민의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민원처리와 자료수집

(2)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와 인권행정의 체계화가 정착되지 않았고,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기에 예산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야별 전문적 시각을 갖춘 시민단체의 역할은 중요.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전진식

한겨레신문 기자

ㄱ.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들, 언론들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인 듯이 강조하는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 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듯 분리되어 가고 약화되어 가는 영역, 즉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통해서도 대표되고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최장집, <위기의 노동>(후마니타스, 2005)

- 지역, 특히 농어촌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방관, 묵인, 책임 회피는 심각한 상황. 다수의 지자체장들에게 인권은 ‘정치’의 영역이 배제되고 있음. 청양군 강정리 사례가 상징적.

ㄴ. 충남도 사례/조례 따로, 행정 따로. 선언 따로, 현실 따로.

- 충남도는 진보 개혁 성향의 안희정 지사가 2010년에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 그러나 만 4년 남짓한 기간 충남도정은 외형에 견줘 내실이 부족.

- 충남도는 2012년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에 따라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인권선언’ 발표.

- 조례 4조(도지사의 책무) 2항은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 그러나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이 석면광산/폐기물처리장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개소에 맞춰 ‘1호 진정’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충남도지사는 조례 규정조차 이행하지 않음.

- 조례 17조(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인권센터 설치에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민인권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ㄷ.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가령 충남엔지오센터) 절실

-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상황은 매우 열악.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 가운데 20~30대는 전체의 33.3%, 40대가 51.9%, 50대 이상도 14.9%. 단체 상근활동가 수는 아예 없거나 1명뿐인 경우가 17.1%, 50.5%가 5명 이하였다. 활동가들 가운데 12.1%는 1년에 단 한차례도 내부 교육을 받지 못함.(충남시민재단이 2014년 9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출한 <충남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교육 수요조사 보고서> 참고)
- 인권침해 당사자들이 직접 피해 구제에 나서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강정리 사례 또한 청양시민연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 이 때문에 시민과 시민을 잇는 ‘아리아드네의 실’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편화되어 조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단체를 하나로 묶는 중간지원조직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함. 시민사회가 성장해야 인권도 함께 성장함.

ㄹ. 대전인권사무소에 바라는 점

- 인권침해 현장 확인에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해야. ‘현장에 답이 있다.’
- 인권교육 대상에 지자체장들도 반드시 포함해야. 행정기관의 수직적 속성상 단체장들의 인권의식 수준 높여야.
- 지역언론들의 참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에도 적극 대응해야.
-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교감 없으면 대전인권사무소는 ‘섬’이 될 수 있음.
- 조직 규모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



생활 속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충북인권연대 활동 중심으로 -

오 창 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1. 충북 NGO단체 현황

-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확대되었다. 개인의 권리의식 제고로 국가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확산되어 이를 담아내기 위한 시민단체설립이 가속화되었다. 충북도 이와 마찬가지로 1980년 후반에 충북시민회(現 충북참여연대)가 출범하였고 이후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인권, 복지, 장애인, 여성, 노동 등 특성과 역할에 맞는 시민단체로 분업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1)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역별, 분야별 단체 현황

	청주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합계
환경	12	1	3	1			2	1	1			21
인권	4	1										5
평화/통일	13	1	2	1	1	1		2	1			22
여성	9	2	1		1	2	1	1	1	1	1	20
권력감시	4		1									5
정치/경제	6		1									7
교육/연구	24	3		2		2				1		32
문화/체육	13	3	1			1	2	1				21
복지	20	3	8	1	1	6	3		3			45
청년/아동	20		1			1		1	2			25
소비자권리	3											3
도시/가정	5											5

1) 충북 NGO 센터 2014 충북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분석 자료

	청주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음성	증평	진천	합계
노동/빈민	2	1										3
외국인	1	1		2							2	6
모금	1							1				2
자원봉사	13	5	4		1	4	2	2	1		2	34
국제연대												0
대안사회	7	1	1					1				10
온라인활동	0											0
기타	4											4
응답없음	4	0	0	0	0	0	0	0	0	0	0	4
합계	165	22	23	7	4	17	10	10	9	2	5	274

- 충북NGO센터에서 조사한 2014충북비영리민간단체 현황에 따르면 충북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는 369개 단체이며 이 중 274개 단체가 현황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단체의 60.2%가 청주시에 편중되어 있다. 인권 단체는 5개로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충북의 인권단체는 ‘인권연대 숲’,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여성인권센터 늘봄’ 등이 있다. 이들 단체가 전문 분야에 특화된 형태로 인권분야에 천착하고 있다면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고 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회복지비리 대응, 도급택시 토론회, 충북경찰 무분별한 인적·차적 조회 분석발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단체와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2. 인권도시 충북을 위한 충북인권연대 발족

- 2013년 12월, 충북도의회 김형근 의원의 발의로 충북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로 없었고, 6.4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 그 효과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권이라는 개념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우선 만들고 보자는 식의 인권조례는 의원 개인의 실적 쌓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 전국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만 놓고 보면 인권의 가치와 감수성 등이 우리 삶에 충분히 녹아들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 이에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는 이미 2014년 사업계획으로 충북인권단체의 연대체 구성과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충북이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인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13개단체²⁾결합해 인권전문가 초청 간담회 및 강연, 6.4지방 선거 정책질의서 발송, 충청도교육청 인권마당 진행을 진행했으며 매월 정기·비정기 회의와 더불어 자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6.4지방 선거 도시자 정책 질의서 답변 결과³⁾ : 충북인권연대에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인 인권센터 설치와 위상, 인권영향평가, 인권교육 등을 중심으로 6.4지방선거 충북도 도시자 출마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중, 새누리당 윤진식, 통합진보당 신장호 등 각 후보자에게 5월 20일 질의서를 발송, 5월 24일(토)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이에 대해 이시중 후보와 신장호 후보는 5월 23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거둬진 답변 요구에 후보자와 상의해야 한다면 끝내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1) 귀하께서 충북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인권증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센터를 설치를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시중 후보 :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13.12.11의결) 제 10조에 의거하여 민선 6기내에 인권센터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신장호 후보 : 충북 인권인식제고와 인권향상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2) 귀하께서는 인권센터설치 및 위상과 관련 인권센터 설치는 도시자 부속기관이나 충북도 집행부(인권담당관실) 내에 설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시중 후보 : 도시자 부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장호 후보 : 인권센터의 실효적 역할과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부내 보다 인사와 재원의 독립성이 보장된 부속기관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봄.

3) 인권영향평가는 정부나, 조직, 기업들이 좀 더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평하는 제도입니

2)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사)충북여성장애인연대, (사)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연대습,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충북사람연대

3)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중 후보,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 질의서 발송/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답변거부

다. 귀하께서는 조례에 의거 충청도 사업집행 전반에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중 후보 : 조례에 의거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모든 사업과 정책집행에 있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것처럼 인권사업 실행과정 결과를 모니터링 기능을 하는 ‘인권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인권도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 시·군의 도민에게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시중 후보 :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인권향상을 이바지 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인권상 제도 마련, 인권박람회 개최(세계 인권 상황, 제도를 소개하고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영화, 사진전, 미술전, 음악회 등)

5) 조례에 따르면 충청도내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결과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중 후보 : 조례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당연히 매년 인권인식제고와 인권상황을 정책을 집행하고 일선에서 어느 정도 실행 정도와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모든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문제점개선점을 논의하여 보다 나은 인권에 관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겠음

6) 충북인권연대는 분야별 전문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충북인권연대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각종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시중 후보 : 인권위원회와 협조하여 민·관거버넌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장호 후보 : 도지사로서 취임하면 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모든 정책에 대해 도민인권차원에 재검토하여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사안은 개선하겠음. 새로운 정책입안, 집행, 평가에 인권측면을 고려하겠음. 모든 정책의 입안과 평가에 인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충북인권연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한 인권위원회 구성에 인권단체 인사가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14명 중 8명을 인권단체 인사 및 친 인권 인물로 선임토록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충북여성장애인연대 강경희 대표)을 충북인권연대 인사가 맡아 적극적으로 충북도의 인권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4) 충청도인권위원회 위원장(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홍성학 교수), 부위원장(충북여성장애인연대 강경희 대표)

3. 인권조례 제정 지자체 이벤트가 되어선 안 된다.

인권 범람의 시대다.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교 무료급식 등으로 촉발된 진보·보수의 갈등은 역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우후죽순 격으로 지자체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다. 광역단체 14곳, 기초단체 52곳 등으로 확산되었으나 인권의식은 바닥에 머물러 있다. 이는 2014년 화제가 군내부의 인권유린 실상을 보여 준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을 보여준 세 모녀 자살 사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인권조례는 자치단체의 이벤트성 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례만 제·개정했지 이행 실태는 몇 곳을 제외하곤 걸음마도 못 댄 곳이 많다. 인권이라는 상품성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다. 비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성추행, 성희롱은 일상이며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인권은 진보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인권을 이야기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얼마 전 서울시 인권선언이 무산된 것도 인권의 기본가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대중강연, 토론회, 교육 등의 대안이 절실하다. 인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 인권증진을 위한 NGO의 역할

1) 중복인권증진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를 위한 견인역할

- 조례에 의거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기본계획 수립하는 등의 제반 업무 담당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인권감수성이 높지 않고 낮고서는 의지를 가지고 인권관련 업무를 보기 어렵다. 행정에서 인권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인권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인권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우선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전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선진적으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을 방문 견학하는 기회를 제공,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또한 지역 인권단체와 상시적인 회의체계를 구축 함께 인권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책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2) 조례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충북도지사는 정책질의서에서 인권센터 설립과 인권교육 결과, 인권영향평가, 등을 약속했다. 조례가 정책으로 이반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또한 충북도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인권교육 참여 기회를 마련해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충북도인권위원회가 자발성을 기초로 하여 충북도 인권의식 확장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견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 지난 충북에서는 제천 영육아원 아동학대 문제, 진천광혜원 국가보조금 30억 중 2억 4천만원 부정수급 및 노조원 해고문제, 매그나칩반도체 뇌손상 전신마비 노동자 보상 문제, 인권유린을 당한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대응. 충북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마련 등 연대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4) 양질의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짧게 5~6년 길게는 20여년 장애인, 노동, 여성,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분야별로 활동한 시민운동가 많음에도 인권강사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지역의 인권 교육은 지역의 인권강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인권강사를 양성하여 공무원 및 수요처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5. 생활 속 인권증진을 위한 제언

1)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와 충북인권연대와의 파트너십 강화

- 인권강사교육을 위한 지원
- 지역 인권문제 발생 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마련

2) 조례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

- 인권담당 주무관에 대한 인권프로그램 마련.
- 워크숍 및 선진 지역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답사 프로그램 마련
- 충북, 충남, 대전, 세종 등 인권단체 간 교류를 위한 연대체 구성(정기적 간담회 및 토론회,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3) 충북도내 인권 감수성 확산을 위한 노력

- 충북도 대학 중 인권센터가 있는 곳이 없음.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대전사무소의 권고 및 노력(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 조사 등 자료 축적)
-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회사, 복지시설, 단체 등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인권토론
회



3 주제발표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

- 전문가 토론 3-1 오영달 충남대학교 교수
- 전문가 토론 3-2 음명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 전문가 토론 3-3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국장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대전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

류 인 덕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I. 들어가며

내일이면 세계인권선언문을 발표한지 66주년이 된다.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이 선언문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즉 인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선언문을 만들었다. 이 선언문은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48.12.10. 선포되었으며, 세계 360개국의 언어로 배포되었다. 이 선언문으로 ‘인권’이라는 단어는 명실상부하게 유엔의 핵심용어로 자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선언이 선포되고 60여년이 지난 오늘, 인권의 주체는 ‘생활 속 인권’으로 변모되고 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인권이란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권의 목록은 다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달랐고 우선순위도 달랐다. 인권침해의 주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해진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이 생성, 발전하고 그 규모에 따라 활동영역이 한 국가의 통치영역을 넘어 여러 국가에 미치는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주체가 되었다.

이로써 과거의 인권운동이 막강한 국가권력으로부터 투쟁을 통하여 자유를 찾는데 몰두했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권의 제도화, 생활화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II. 지역인권사무소의 신설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기존의 사법기관에 비해 신속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서민들, 특히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생활 속 인권 보장의 전제는 ‘인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주제가 낯설지 않아야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권기자단, 팟캐스트 운영, 지역주민 인권생활지도, 인권체험관, 지역주민인권학교 등 인권이라는 주제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생활 속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립초기부터 지역사무소 설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인권위에는 4개의 지역사무소가 있는데 2005년 부산과 광주를 시작으로 2007년 대구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7년이 경과한 2014.8.27(개소 10.15)에 대전인권사무소가 설립되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인권을 위한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여 지역인권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 왔으며, 중기계획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에는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강화를 두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인권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대전인권사무소는 그 관할 영역이 대전·세종·충청지역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정부세종청사에 총리실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대부분이 최근 입주해 왔고, 정부대전청사에는 ‘청’단위 부처가 입주해 있어 명실상부한 제2 수도권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구급시설과 군부대도 많이 배치되어 있고, 천안·아산지역에는 삼성, 현대 등 주요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대학도 거의 6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충청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인권사무소에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조직이 그리 크지 않아 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대전인권사무소의 역할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2) 진정사건 조사·구제
- 3) 인권교육·홍보
- 4)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의 교류·협력

5) 본부와의 협력사업

- 아동, 장애, 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사업
- 지역인권제도화 지원 등

Ⅲ. 생활 속 인권 실천을 위한 인권사무소의 역할

1.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신설된 대전인권사무소의 역할로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권상담이다. 인권상담은 지역주민이 인권사무소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시점으로서 접근성 매우 중요하다. 우선 물리적 거리가 크게 좁혀져 현장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충청지역이 넓어서 대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 접근성은 그리 많이 개선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진정상담전화 1331을 통하여 대전인권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으며, 대면상담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는 대전인권사무소 접근에 큰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즉, 구급·보호시설의 경우 면전진정의 신청을 받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고 있으며, 원거리 지역주민들의 경우 정기적인 인권순회상담(주로 월 1회 정도 계획 중)이나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대전인권사무소 조사관과 직접 대면상담 및 진정접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인권위 활동은 인권관련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감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진정사건 조사·구제

진정사건도 지역사무소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면 기존 조사기간에 비해 훨씬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은 조사활동의 현장성이 강화되어 조사내용도 보다 정치하고 풍부하게 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전인권사무소의 인력의 한계가 있어 충청지역에서 접수되는 진정사건 모두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 인권침해진정사건 평균 소요일수(2013년 기준)

구 분	평균 소요일수	본 부	부 산	광 주	대 구
2013년	86.6	103.7	61.8	60.6	41.9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

대전지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교육 자치단체 포함), 구급시설, 정신보건시설관련 진정사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본부 해당부서와 협력(또는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학교진정사건, 장애차별 진정사건, 공직유관단체진정사건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충청지역에서 제기되는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지역인권사무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인권사무소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3. 인권교육

대전인권사무소 신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인권교육 분야이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인권위가 인권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약 18만 여명에 달한다. 그중에서 지역인권사무소(부산, 광주, 대구)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이 약 7만여 명이나 된다. 이처럼, 앞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한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증대될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인권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2013년도 인권교육 실시현황(인원수/명)

구 분	합 계	본부	부 산	광 주	대 구
2013년	180,323	110,362	20,153	12,848	36,960

출처: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본부(교육운영팀)에서도 2015년도부터 기존의 인권교육시스템을 대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조치의 하나가 각 지역인권사무소에 지역인권교육센터(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과정,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지역인권

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권교육센터가 생길 경우, 각 지역인권사무소에 약 40-50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하여 각종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역도 현재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KT 탄방빌딩 1층 등 2곳 정도 적절한 장소를 확인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인권강사양성과정의 경우 양적 확대 보다 역량 있는 강사를 배출하고자 강사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는 지역에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프로그램도 기존의 의무교육 중심의 인권교육에 더하여 일반 인권교육과정도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권교육과정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권특강도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분야의 개편이 계획대로 잘 시행된다면, 앞으로 인권교육분야에서의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인권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인권홍보

‘인권홍보’ 하면 일반사람들은 다른 기관들처럼 기관홍보를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기관들의 홍보를 법에 규정하는 사례는 없고, 통상 직제령에 홍보부서에 업무를 분장하는 정도로 홍보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홍보는 다르다. 인권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홍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홍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인권교육과 함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인권홍보’를 위하여 인권위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통한 홍보, 인권잡지 발간 등 인쇄물을 통한 홍보, 인권 웹진 등 SNS를 통한 홍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은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인권위가 결정한 권리구제나 정책권고, 각종 실태조사, 토론회 등에 대하여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홍보에는 전달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에 따라 그 전달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인권위에서 제작한 인권홍보 콘텐츠는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인권만화나 인권영화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거나 개봉까지 하고 있다. 인권만화 십시일반은 2003년도에 처음 발간되었는데 아직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인권영화는 거의 매년 1편씩 제작하는데 이미 10편이 넘어섰다. 전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에서 인권영화를 제작하는 곳은 한국인권위 밖에 없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는 딱딱한 인권이란 주제를 만화나 영화로 재미있게 풀어나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인권에 관한 콘텐츠를 ‘게임’으로 개발(인권교육과 홍보 접목)해 보는 것도 권장해 보고 싶다.

대전인권사무소는 이러한 본부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한편, 지역인권사무소의 입장에서 별도의 홍보방안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언론과의 협력, 인권교육과 접목, 지역 인권활동 주체들과 협력사업 진행, 지역주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등 다각적으로 ‘인권’에 관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5. 인권관련 기관, 단체·활동가, 전문가등과의 교류협력

지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인권 추진 주체간 협력체, 즉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 포함), 인권단체·활동가, 전문가, 대전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지역인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역인권현안 등 인권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거나 해결방안을 함께 마련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역인권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또한, 인권활동가 연수프로그램(워크숍)도 마련하여 지역의 인권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모여 지역사회 인권문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거나, 인권위에서 진행되는 각종 방문조사에 지역인권활동가나 전문가 참여, 주요 인권사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는 것은 교류협력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한편, 인권위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인권상담인데, 인권위에서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활동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이미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환·교류, 상담기법 공유,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합동상담 실시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6. 인권제도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인권에 대한 지역화, 제도화는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차례 결친 결의안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13.10월에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 8월에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지역인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에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며,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는 인권분야에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권조례 제정>

인권위는 2012.4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244개) 하였으며, 이 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붙임1 참조)과 해설서(각 조문의 취지 설명, 가이드라인 등)를 마련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이후 인권위는 각 지역을 돌면서 설명회, 협의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지원하고 독려해 왔다. 그 결과 총 244개 중 177개(72.5%)의 지자체(광역 및 기초)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인권제도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높은 관심도에도 불구하고, 2014.10월 현재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역14, 자치1, 기초50 등 총 65개 기관에 불과하다(붙임2 참조). 더구나, 조례를 제정한 곳도 실제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관계자의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아 인권위의 기술적 지원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증진(정책)기본계획>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광역시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 등 3곳이며, 기초단체도 서울 성북구 등 5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전, 충남 등 현재 진행 중인 곳도

다수 있으므로 계획을 수립한 곳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증진계획은 수립하기 전에 먼저 인권상황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 지역사회의 인권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지역실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해결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천안·아산의 경우 기업체가 많으므로 노동인권, 이주민인권 등을 주요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법무부 주관)에서 마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인권위의 인권증진행동계획 등을 참고하여 국가 및 인권위의 인권관련 중점추진방향(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한 후 인권관련 기관, 단체·활동가 및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종합적인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직 내 각부서의 의견수렴 등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 등>

인권영향평가란 각종 법령이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이 법령(정책)안이 지역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이다. 인권위도 지난 2004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청사 신축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인권조례에 반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갖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반면, 행정업무만 가중시킴으로써 또 다른 행정상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인권지수는 여성부의 성평등지수 등 분야별로는 일부 국가기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위도 최근 3년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인권지표선정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수정 보완과정이 진행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인권지표 선정문제, 관련 통계부족 등이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이 미흡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정착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체계>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데 현재 서울, 광주, 강원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인권증진위는 기본계획수립, 평가, 정책 등 인권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서울, 광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권전담부서 설치 역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광역의 경우 서울, 광주, 강원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없고 기초도 서울 성북구 등 9개 정도이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 1인을 두고 있거나 담당자 1인도 인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부서설치나 전담인력 배치의 경우 전제적인 인원 증원이 아니라 총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려면 기존 일부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별도의 전담부서 설치하는 기관장의 결단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7.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발굴, 추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충청권지역은 타 지역과 다른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데 이를 인권 분야와 잘 접목시켜 향후 대전인권사무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부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기관, 주요 군부대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인 만큼, 향후 인권 교육·홍보분야, 진정사건 조사, 본부와의 협력사업진행 등에 있어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요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고 이와 함께 이주민(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어 기업과 인권, 이주민 인권 등에 대해서도 충청권지역의 특수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유관단체도 충청권지역에 100여개가 있고 대부분이 공기업형태로 있어 기업과 인권 분야에 결합하여 인권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이 충청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충청권 대학에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인권과목(예, 국제인권법/교양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대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 관련 인권문제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과 일을 병

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건강권, 노동권 등 관련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더불어 이주민 인권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8. 기타 본부와의 협력사업

위에 언급한 분야 외에 본부와 지역인권사무소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아동인권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의 사업이 있다.

IV. 맺는 말

우여곡절 끝에 대전인권사무소가 인권위 설립 이래 13년 만에 신설 되는 만큼, 충청권지역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클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권사무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 본부의 적극 지원이 있어야 하고, 지역인권 관련 기관, 단체·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하여 지역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권교육의 활성화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예방적 활동이다. 학교, 가정, 직장에서 인권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이를 개선,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기본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권리와 의무 등 많은 것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주제들이다. 2015년도부터는 지역인권교육센터가 설치되고 인권교육의 상당부분이 지역인권사무소로 이관되므로 지역인권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지역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하여 함께 의논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의 제도화다.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각각의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제도화, 추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인권보장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이 플랜에 따라 각종 정책을 실현하고 인권사무소와 함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이다. 인권교육, 인권보호증진활동 등 예방과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나 이와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책이 필요한데, 구제의 실질성을 담는 데는 관련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 강화와 함께 인권단체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이 중요하다.

조 례 표 준 안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붙임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현황(2014. 10.)

○ 광역자치단체(14개), 기초자치단체(50개), 특별자치시(1개)

	지방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비고
광역자치단체(14개)				
1	서울특별시	'12.9.28	인권기본조례	
2	부산광역시	'12.2.22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7.10.개정
3	광주광역시	'09.11.16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3.9.1.)	'12.1.1, '13.4.1.개정
4	울산광역시	'12.10.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12.11.2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13.7.10.개정
6	충청남도	'12.5.10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7	전라북도	'10.7.9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12.7.5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9	경상남도	'10.3.25	인권 증진 조례	'13.12.12.개정
10	강원도	'13.6.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2.21.)	
11	경기도	'13.8.5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2	경상북도	'13.11.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	충청북도	'13.12.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4	대구시	'14.5.20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기초 자치단체(50개)				
1	서울 성북구	'12.7.19	인권증진 기본조례	
2	서울 영등포구	'13.3.2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	서울 서초구	'13.5.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	서울 서대문구	'13.1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5	서울 도봉구	'13.11.14	인권기본조례	
6	서울 동작구	'13.12.1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7	서울 성동구	'14.3.20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8	부산 해운대구	'10.11.22	인권 증진 조례	'13.10.1.개정
9	부산 수영구	'10.12.15	인권 증진 조례	
10	부산 남구	'11.5.6	인권 증진 조례	
11	부산 북구	'12.3.12	인권 증진 조례	'13.9.25.개정
12	부산 중구	'12.11.9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13.7.1.개정
13	부산 진구	'13.4.9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4	부산 사상구	'13.9.1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5	대구 달서구	'12.12.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7.11. 개정

	지방자치단체	제정일	조례명	비고
16	광주 남구	'12.8.10	인권증진 기본조례	
17	광주 서구	'12.12.3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8	광주 광산구	'13.4.16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조례	
19	광주 동구	'13.7.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	광주 북구	'13.12.2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1	울산 북구	'11.1.10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12.3.5. 개정
22	울산 동구	'11.11.8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3	울산 남구	'13.1.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4	울산 중구	'13.4.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5	울산 울주군	'13.12.19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6	대전 서구	'13.2.1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7	대전 대덕구	'13.7.1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8	경기 광명시	'11.8.9	시민인권 조례 시행규칙('12.12.6.)	'11.9.22, '12.3.13 개정
29	경기 화성시	'12.12.3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0	경기 김포시	'13.1.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1	경기 고양시	'13.1.8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32	경기 의정부시	'13.5.20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33	경기 수원시	'13.7.3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4	경기 성남시	'13.8.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5	충남 부여군	'13.1.9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6	충남 천안시	'13.3.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7.22.개정
37	충남 서산시	'13.4.5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8	전남 목포시	'12.12.17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9	전남 완도군	'12.12.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0	전남 고흥군	'12.12.2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1	전남 보성군	'13.4.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2	전북 군산시	'13.10.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3	경남 고성군	'12.7.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4	경남 진주시	'12.10.4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5	경남 함양군	'12.12.2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6	경남 사천시	'13.10.30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47	경북 문경시	'12.9.27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8	경북 고령군	'13.4.8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49	강원 원주시	'12.12.2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3.7.12.개정
50	강원 영월군	'13.9.13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4.9.22. 제정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논고

오 영 달

충남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설립됨으로써 이제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 “생활 속의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말이 명실상부하게 되었다. 물론, 인권은 가까이 인권사무소가 있든 없든 항상 지켜지고 증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인권을 전담하는 인력이 상주하는 인권사무소의 설치는 분명히 이 지역의 인권증진에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 소장의 발제문은 우선 생활 속의 인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포괄적이며 관련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어서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들을 부족함이 언급하고 있다. 인권의 의미로부터 지방수준에서 조례제정 등 노력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권보호 정책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있어서 계몽을 주고 있다. 그만큼 이 발제문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인권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논평자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인권이라는 말은 인간의 일상 삶 속에 항상 작용하는 것이어서 어떤 때는 그저 잊고 지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삶의 정의롭고, 조화로우며, 행복한 삶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듯이 바로 인권은 이러한 고민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독재 권력에 대하여 투쟁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인권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추동력이 되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다행히 이러한 독재 권력의 문제는 현저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인권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행동주체로서 삶을 영위해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에 부딪힐 때 그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문제는 이 인권의 의미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인권을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평등, 즉 자유권으로 이해하는 경우 우리 사회에 많이 정착된 자유민주주의를 통해 많이 해소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권을 이러한 자유권에 더하여 경제 및 사회적 권리로 이해하는 경우 복지정책의 확대에 귀결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지정책의 조정과 관련한 논쟁은 바로 인권의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권의 의미에 대해 접근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류 소장의 발제문에서도 “인권침해의 주체도 국가권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해진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함께 많은 기업이 생성, 발전하고 그 규모에 따라 활동영역이 한 국가의 통치영역을 넘어 여러 국가에 미치게 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주체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소 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인권침해의 주체는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인권의 기준에 비춰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굳이 다국적기업을 거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다국적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삶을 지탱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권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생활속 인권’에서 중요한 일은 류 소장의 발제문에 나타난 것처럼 물론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등을 통한 조사 및 구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서 인권제도화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인권이라는 의미의 성격 상 바로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인권의 의미를 일상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공공기관, 일상적인 삶의 터전으로서 직장, 그리고 교육의 현장으로서 교육기관들 그리고 현재 대전 등 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에 대해 인권의식적인 어울림과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인권사무소의 관할 지역인 대전과 충청 및 세종시에는 군 주요 기관 및 훈련소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적극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가족 간의 삶도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상호존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차원 및 지방차원에서 인권업무 담당기관을 정비해, 갖추어나가면 한국사회는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하여 좀 더 의식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또 시민들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삶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전인권사무소의 설치를 축하하고 대전, 충청, 세종지역에 있어서 인권 보호와 증진,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제 막 출범하였으니 차차 업무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 등이 충분히 충원되어 명실상부한 인권지킴이가 되기를 기원한다.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음 명 희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활동가

‘인간의 ’부인’심리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이다. 따라서 ’왜 그 사건에 침묵하고 부인하는가?’ 라고 묻기보다, 대다수 사람들이 부인하지만 왜 어떤 이들은 부인하지 않고, 인권 단체에 가입하며, 미약하게나마 행동에 나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실천하는 것인가..? 라고 되물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소극성을 자책하는 깊은 수치심’을 사회적 행동의 원동력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부분과 ‘권리’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권리’만 추구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룰 수 있겠는가? ‘인간’에 내재 된 인도적 휴머니즘 전통과, ‘권리’에 내재된 법적·계약적 논리를 섬세하게 구분하면서 동시에 통합할 줄 알아야 한다. 단순히 권리담론만으로 인권의 전모를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권리’담론의 바탕에는 인도적 휴머니즘이 깔려 있어야 한다. 다른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것을 인류의 ‘우애’로 이해하며, 정치적 ‘연대’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상적인 ‘권리운운’을 넘어선 인권의 보다 깊은 의미이다.

인권과 인도적 가치를 시인하는 ‘인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의 양성,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 이것이 인권운동의 제1사명이다.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인간 양성을 인권운동의 근본 목표로 설정한다면 어떤 교육이 구체적으로 필요할까를 상상할 수 있다. 인권침해와 부인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 토론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인의 언술과 화법을 탐지해내고 그것을 격퇴할 수 있는 ‘언어적 도덕성’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스탠리 코언) -

나-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1. 삶으로 표현되는 인권을 위해서는 나-우리 안에 있는 '부인'기제를 인정해야 하고 '부인'은 나-우리의 존엄성을 품위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우리의 존엄과 품격을 위한 행동은 무엇일까?를 찾아야 한다. 이때 나-우리는 '어떤 행동이든 일단 취하고 보자(스탠리 고언)'는 최소한의 제안이 실천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2. 인권을 개인의 권리주장으로만 해석되는 현상은 나-우리의 인권의식 수준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이분화 하지 않는 의식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나-너-우리라는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
3. 인권은 한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는 개념어이다. 삶의 구체적 주체들이 공감, 존중, 존엄성, 이해, 연대, 진정성, 도덕성..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면을 흔드는 질문과 우리의 언어가 갖는 도덕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 '왜?'라는 의문으로부터 찾아진다. 인권교육은 이렇게 나-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가치를 찾게 하고, 자신-타인을 공감하게 하며, 알고 싶어 찾아가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생활 속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1. 인권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권을 삶의 형태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세계인권선언 66주년을 기념하는 이 토론회에 세계인권선언문의 역사와 내용을 담는 내용이 없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진 만큼의 생활인권이라는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을 테지만 내용이 없으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생활인권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내용이 없으면 형식과 아이템에 집착하게 된다. 내용을 잡고 부분을 담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다음 줄기는 그 안에서 찾아질 것이고 그것은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2. 도가니법 이후 인권교육이 현실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접하지만 현장 교육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인권'을 내 삶 밖의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다.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권이란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가능하다. 개인의 삶과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을 갖추고, 분명하게 볼 줄 아는 관점을 가지려고 할 때 인권은 삶의 형태로 나타난다. 관점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내용과 방식인데 정의 내리려고 하는 인권, 전달하려고 하는 인권, 개인의 내면과 역사를 외면한 인권교육으로는 전혀 이뤄낼 수 없다. 새로운 관점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높인다.

국가위원회가 ‘생활인권’이라는 패러다임을 비전으로 세우고 있다면 인권교육을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권’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길 바란다.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을 실적 중심의 사업 틀 안에 가둬 두지 않길 바란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생활인권의 패러다임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장 인권운동현장과 활동가들의 친밀감 있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산 있으니 하고 싶은 사업 있으면 말씀 해달라..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갑처럼 행동하는 것은 친밀감 있는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고민이 있다면 진솔하게 먼저 터놓고 얘기하고, 듣고 싶은 말만 품으려 한다면 허공에 떠 있는 인권위원회가 된다. 내용, 빛깔, 사람이 빠진 형식만 남은..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장 인권적 표현인 것 같다) 서로를 품위 있게 대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진정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바란다.
4. 지역사회 간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인권사업을 고민해보길 바란다. 각 자치단체별 삶의 방식을 비롯한 사회문화적 차이는 인권실천현장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하게 한다. 예를 들어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비롯한 구체적으로, 이주여성이 많은 지역,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 대규모 거주복지시설(음성군과 같은)이 있는 지역 등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획일화된 사업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본 방향으로 다름-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인권사업을 실천하길 바란다.



“생활 속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대전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발제에 대한 토론문

이 병 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국장

1. 인권위 활동은 여전히 국가권력 문제를 놓고 갈 수가 없다

발제문 서언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이후 변화된 인권운동 상황을 개괄하면서 “이로써 과거의 인권운동이 막강한 국가권력으로부터 투쟁을 통하여 자유를 찾는데 몰두했다면,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인권의 제도화, 생활화를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일반론에 동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인권 침해 주체로서의 국가권력을 인권이 추구하는 이상에 맞게 순치시키는 과제가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는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광범위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 고무” 조항 때문에 70년대식 막걸리보안법 적용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공안사건이 최근 몇 년간에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데 솔선해야 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국민을 간첩으로 몰고 그 증거를 조작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또한 서언에서 제시한 세계인권선언문 중에 21세기 양극화된 세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22조~27조의 경제사회적 권리 부분을 보더라도, 국가권력의 자원배분 행위가 인권의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권력이 행사하는 자원배분 행위의 결과가 여전히 세계인권선언의 이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 의료부문의 영리화 추구, 주요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 등이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 속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인권의 제도화 생활

화”라는 좋은 표현마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국가권력을 제외한 “생활 속의” 즉 자잘하고도 소소한 인권문제를 찾아 집중하자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과 치열한 가치논쟁이 한창인 인권현장의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2. 인권위 대전사무소는 사회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진정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

발제문에서는 “생활 속 인권 보장의 전제는 ‘인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주제가 낯설지 않아야 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는 물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인권기자단, 팟캐스트 운영, 지역주민 인권생활지도, 인권체험관, 지역주민인권학교 등 인권이라는 주제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차원에서는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년)에는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강화를 두고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설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인권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첫째 지역 단체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사무소 자체의 주민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개소식 때 보인 모습부터 별로 주민 친화적이지는 않았습니

다. 첫 번째로 지역사무소는 개소식 때부터 “우선 사무소가 입주한 탄방동 케이티빌딩은 통신보안건물로 모든 출입자에 대해 신분 확인이 이뤄진다. 인권위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또 13층에서 인권위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또 다른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사무소의 출입절차가 불편한 것은 익명의 인권침해 제보나 상담을 위한 주민들의 접근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사무소가 입주 사무실을 마련하면서부터 주민들의 편안한 출입과 신분보호를 위한 고민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오마이뉴스 2014. 10. 13)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상 차려진 개소식도 시장, 구청장, 시의회 의장 등 온통 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치레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장애, 아동, 노숙, 성매매여성 등 실제 인권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노력은 많지 않았습니

해 뛰었던 사회단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는 개소식이 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의 사실로 판단하건데 대전인권사무소는 개소 당시부터 지역 실정부터 파악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입니다.

발제문에서는 대전인권사무소의 역할을 요약(인권상담 및 진정접수/진정사건 조사·구제/인권교육·홍보/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의 교류·협력/본부와의 협력사업-아동, 장애, 노인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증진사업, 지역 인권제도화 지원 등) 이상 5가지로 해놓았습니다. 스스로 규정한 역할 중에 하나를 시작부터 이런 모양새로 가져가야 했는지 아쉽습니다.

3.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사무소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발제문에서 지역인권사무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전지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구급시설, 정신보건시설관련 진정사건이다. 나머지 사건은 본부 해당부서와 협력(또는 지원)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학교진정사건, 장애차별진정사건, 공직유관단체진정사건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충청지역에서 제기되는 진정사건의 대부분을 지역인권사무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인권사무소의 규모와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단체가 기대하는 부분이 큼니다. 대전 소재 인권단체인 “양심과 인권-나무” 과거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시절부터 대전교도소를 비롯한 대전충남 지역의 양심수들을 옹호하는 사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방에 있는 최대 구급시설인 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한 양심수 사업은 저희 단체의 여전한 중심 사업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양심수들을 중심으로 교도소 내 수감인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매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용산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남경남 전철연 의장님이 자살방지용 철망 때문에 방안 환기가 잘 되지 않은 문제와 법에 규정된 대로 면회시간을 연장할 것에 대한 요구, 독거실에 재소자들을 과다 수용하는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집회와 면담 등으로 교도소 측과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지만(방충망철거 대신 환풍기 시범 설치, 공안수의 경우에는 요청하면 면회 연장, 독거실 수용문

제는 점차적으로 보완)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의 해결이고 비슷한 문제는 매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4 9월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 중인 이재성 씨에 대한 기동순찰대의 폭언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 보안과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재성씨 사건은 잠정결론을 내고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동순찰대는 ‘기초질서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사소한 행위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합니다.

이 사건들에서 보는 것처럼 양심수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재소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대개 사건 해결이 양심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사항만 해당 관료의 재량으로 임시 양보하는 수준에서 미봉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반 재소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우리단체는 자주 교도소를 방문하고 있고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어디보다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습니다. 때문에 지역인권사무소 잘 협력이 이뤄진다면, 일반재소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데 커다란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4. 지역 인재를 키우고 활용하는 인권교육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발제서는 지역사무소의 인권교육부문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 강사양성과정의 경우 양적 확대 보다 역량 있는 강사를 배출하고자 강사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는 지역에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일반 교육프로그램도 기존의 의무교육 중심의 인권교육에 더하여 일반 인권교육과정도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별도의 인권교육과정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권특강도 활성화되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인권교육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분야의 개편이 계획대로 잘 시행된다면, 앞으로 인권교육분야에서의 지역인권사무소의 역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인권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권사무의 구상에 적극 찬동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인권교육진흥 사업이 어떤 방향에서 이뤄지면 좋겠는지를 첨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차원의 강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강사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강사단 교육을 하는 곳도 제법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활용 가능한 강사를 배출하기 보다는 열성 회원들이 심화 교육 정도에 그치

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강사단은 장기적인 지역 단위의 인권교육 수요를 감안해 체계를 세워 멀리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한번 교육을 받으면 곧바로 강사로 나설 수 있게 전문성을 충분히 습득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재도 충실했으면 합니다. 또한 강연 시연과정까지 거쳐서 완벽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반인에 대한 무작위 인권교육 보다는 우선적으로 강사양성 프로그램부터 먼저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일이 사람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오래가고 멀리가고 단단하게 간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로 나타나는 교육 횟수, 참여자 수를 계량해서 발표하는 데 중심을 둔다면 상대적으로 강사단 양성을 하는데 소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뿌리를 박고 줄기를 뺏어 가듯이 강사단을 키워내 수많은 가지에서 인권교육 사업이 우리지역에 대규모로 진행되었으면 바람이 큼니다.

셋째, 급한 대로 일반적인 인권교육은 지역이 가진 교육역량부터 우선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지역에는 인권단체라고 공식 표방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인권 증진 사업인 단체가 각 부문에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여성인권티움, 노숙인의 자립 자활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해 온 벤엘의집 같은 노숙인 담당 전문기관, 장애부모연대처럼 우리지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법이 만들어 지는데 회원들이 나서서 엄청난 일들을 해 낸 활동성 있는 장애인단체, 가난한사람들의 인권증진에 매진 해 온 무료과산상담 단체로 10년간 활동 해 온 사회적협동조합민생네트워크-새벽 같은 단체가 그 예입니다. 원래 일이란 것이 하나를 잘 하면 열을 꿰뚫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부문에서 생동감 넘친 인권증진 현장 활동을 해 온 단체의 경험은, 활동 사항만 글로 말로 옮겨 놓아도 귀중한 인권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좋은 교육사례를 남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5. 지역에 배여 있는 역사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가지고 인권현장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발제문서 지역사무소 역할 관련 3-7에서는 “국가기관, 주요 군부대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인 만큼, 향후 인권 교육·홍보분야, 진정사건 조사, 정부와의 협력사업진행 등에 있어 대전지역사무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주요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고 이와 함께 이주민(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업과 인권, 이주민 인권 등에 대해서도 충청권지역의 특수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공직유관단체도 충청권지역에 100여개가 있고 대부분이 공기업형태로 있어 기업과 인권 분야에 결합하여 인권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사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대전은 ‘한국전쟁당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곳’이라는 지역 역사를 감안한 사업계획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는 1950년 6월28일 경부터 7월 17일 새벽 사이 최소 1,800명 이상의 보도 연맹원과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이 헌병대와 경찰 등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바가 있고, 이에 2010년에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평화 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를 이끌어내는 데는 15년 전에 결성된 유족회와 대전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남은 과제인 정확한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 등에 지역사무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더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나쁜 역사는 반복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지역사무소가 엄청난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역사공간을 살아있는 인권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합니다. 사무소 차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유족회와 상의해서 집단기행을 기획해도 좋을 것이고,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를 후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인권교육과정에 학살지 현장방문을 필수로 포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증진도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얘기지, 죽은 사람한테는 후하게 장례절차를 논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생명 존중이 인권존중의 근본입니다. 평화와 인권, 생명권을 교육하는 데서는 대전의 학살유적지만한 좋은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인권교육에 지역의 역사자원을 지역사무소가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6.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자신의 인권부터 지켜 나갈 수 있게 지역사무소의 역량을 우선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발제문 3-7에서는 또한 “대학이 많다는 것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학생들의 인권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대학생이 많이 있어 학교공부와 함께 노동도 병행하는 문제 등은 이주민 인권분야와 결합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착안입니다.

특히나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중도탈락률이 전국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면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은 학생인권 후진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양극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생활도 양극화 되어서 공부할 귀중한 시간에 편의점 등에 임시로 취업해 아르바이트로 날을 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대학원에 진학한 여학생들은 갑 노릇을 하는 지도교수들에 의해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업해도 이들 청년들 중 상당수는 항상적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상황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자기구제의 방법과 이론을 터득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권리를 지켜 나가고 침해 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철저히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제대로 섰을 때만이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권교육, 홍보사업에서 청년학생들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는 것이리라.

유엔헌장은 이미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 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기준’ 으로서 ‘세계인권선언’ 을 선포한다.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일절 금지한다.

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 한 사람의 인간’ 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8조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조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공개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

12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15조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16조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17조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

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25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30조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세계인권선언 66주년 기념 토론회

— 생활속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안모색 —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행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주 소 (302-859)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빌딩 13층

전 화 (042)472-9039 팩스 (042)472-9046

인쇄처 문영사 (02)2263-5087

I S B N 978-89-6114-380-6 9334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